

「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」

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사업 범위 확대에 따라 행정력 과다 소요로 사업의 직접 추진이 어려움
-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필요함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석면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

나. 추진근거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2)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5조,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

- 3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- 4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
- 5)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(2023. 1. 환경부)

다. 위탁기간 : 2024년 ~ 2025년 [2년간]

라. 사업내용

-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·제거·운반·처리
- 슬레이트 처리로 인한 지붕개량(주택만 해당, 무허가 제외)

마. 사업량 및 소요예산(2024년 기준) ※ 2025년 국비 확보에 따라 변동

- 1) 사 업 량 : 슬레이트 철거 232동(주택 200동, 비주택 32동), 지붕개량 19동
- 2) 소요예산 : 996,120천원 [균특 50%, 도비 15%, 시비 35%]

(단위 : 천원)

총 계	슬레이트 철거			지붕개량
	계	주택	비주택	
996,120	876,800	704,000	172,800	119,320

- 3) 위탁수수료 : 사업비의 8% 이내(최종 정산사업비에 따라 변동됨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

- 1) 선정방법 :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
- 2) 평가내용 : 사업 수행 능력, 사업계획 적정성 등 종합 심사
- 3) 평가방법 : 사업계획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

사. 위탁사무 :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업무 전반

-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
 - ※ 공개경쟁 입찰(구미시 및 인근 지역 업체 우선 선정)
- 슬레이트 면적 조사 실시
 - (위탁기관, 철거업체, 건축소유주 3자 확인 조사)
- 슬레이트 처리 현장 관리·감독 및 안전교육 실시
- 사업 분석 및 사업비 정산, 결과 통보

아. 성과평가 결과(재위탁) : 우수(82.7점)

자.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,
 -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5조,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,
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7조,
 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2023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석면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' 23.8월 기준 철거율은 주택 43.6%, 비주택(축사, 창고) 17.3%로 현저히 낮은 실정이므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,
- 또한,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지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(환경부, 2023년 1월)에는 '지방자치단체장이 슬레이트 해체 등을 직접 추진하되,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위탁사업자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'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탁운영 건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